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0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2140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대명화성 주식회사
피 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7. 21.
판 결 선 고	2017. 8. 18.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6. 7. 13.자 재산세(건축물) 19,713,717원의 부과처분 중 2,973,429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16. 9. 11.자 재산세(토지) 83,145,200원의 부과처분 중 66,361,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0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A 외 4필지 2,331.7㎡ 및 지상 건축물 18,393.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은 2016. 1.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일부인 건축물 653.77㎡ 및 토지 82.84㎡(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2016. 1.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과세물건	과세일자	일반세율적용금액(원)	중과세로인한상승세액(원)	부과세액(원)
건축물	2016. 7. 13.	2,973,429	16,740,267	19,713,717
토지	2016. 9. 11.	66,361,160	16,784,040	83,145,200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2.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려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야 하는데,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0

사건 영업장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는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를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2) 이 사건 영업장과 같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음에도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는 다른 업소들은 중과세처분을 받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업소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평과세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40/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같은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는 고급오락장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며,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10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장의 면적은 653.77㎡이고, 객실수가 11개로서 객실 내부에 노래방 반주기와 화장실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0

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영업장의 출입구 간판과 메뉴판에 '저희 업소는 도우미 없는 건전한 노래타운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영업장의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모집광고에 '도우미 없는 건전한 업소이며, 소주와 호프를 파는 노래방입니다'라는 설명을 부가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B은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건전한 노래타운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영업을 금지하며 만약 영업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는 특약사항을 부기한 사실, 2016. 6. 1. 과세기준일 당시 피고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장에서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장에서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영업장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거나 고용할 개연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영업허가를 단란주점영업으로 변경하려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에서 규정하는 단란주점영업의 시설기준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하여 이 사건 영업장을 부득이하게 유흥주점영업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수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영업장(이하 '비교 영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0

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비교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여 객실 수가 5개 이상이지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 마찬가지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F', 'G', 'H' 등의 상호로 운영되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위 유흥주점들이 시간당 대실료를 받고 노래방 형식으로 운영되는 업소로서 유흥접객원이 없음을 이유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교 영업장 내지 그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유흥주점은 이 사건 영업장과 허가받은 영업형태, 영업장의 시설기준, 운영실태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 과세관청은 이들 영업장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장과는 달리 고급오락장이 아님을 전제로 일반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피고는 위 비교 영업장 등이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영업장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고, 객실 등 시설이 고급스럽고 화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영업장과 비교 영업장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시하는 근거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 판단 요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영업장과 비교 영업장을 달리 취급할 수 있는 유효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비교 영업장과는 달리 이 사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이라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평등주의, 자기구속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0

다.

재판장 판사 한영표

판사 김용환

판사 엄지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0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0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제조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9-20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끝.